09-1-040779

주 의 사 항

- 1.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2.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취업중 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3.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, 차용,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.
- 4. 국가기술자격이 취소·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국가기술자격증

자격번호 09202030227U

성 명황현기

자격종목 1250 토목기사

생년월일 1984.09.16

주 소 부산 남구 감만1동 유창그린 아파트 108동1505호

합격연월일 2009 년 08 월 17 교부연월일 2009 년 08 월 27

소정의 직인이 없는 것은



만1동 유 1505호 17 등 등